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년 1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야영 데크)이 규모가 작아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지하고, 정부규제개혁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휴양림의 입장제한이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야영장” 운영 규정 삭제
 - 안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 별표 1)
 ○ 자연휴양림 위약금 전액 환급 처리기준 변경(별표 2)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 폐지(안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11.4~11.23 (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야영장 및 휴양관”을 “휴양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입장하거나 야영장을 이용하려는”을 “입장하려는”으로, “입장권 또는 야영장 사용권”을 “입장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입장료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를 “입장료”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제6조 제1항 관련)

1.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어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개 인	1,000	700	500
단 체	800	500	300

가. 어른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나. 군인(일반병,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은 중・고등학생 요금을 적용한다.

다. 단체 요금은 30명 이상을 말한다.

라. 만6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

2.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및 주중	
세미나실	67.8㎡	1실/4시간	50,000	30,000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휴양관	50.3㎡형(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8실
숲속의 집	49.8㎡형(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2실
	66.8㎡형(8인기준)	1동/1일	150,000	70,000	2실
제2휴양관	28.5㎡형(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제2휴양관	29.5㎡형(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제2휴양관	36.2㎡형(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1실
제2휴양관	43.1㎡형(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2실

가.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 8월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나. “비수기 주중” 이란 “성주기 및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별표2】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
(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피해유형	보상 기준	비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요금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당일 취소	·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사용료"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야영장 및 휴양관, 숲속의 집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 휴양관----------.
제4조(시설의 이용 등) ① 휴양림에 입장하거나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입장권 또는 야영장 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시설의 이용 등) ① -------- 입장하려는 ---------- 입장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이용 시간) ①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시설이용 시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야영장(야영데크 및 바닥) 이용 시간은 사용일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로 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입장료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는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입장료----------.

제11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3. 그밖에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12조(행위 제한) ①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나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가스버너, 숯불 등을 사용하여 취사한 경우 4. 각종 행상 행위 5. 휴양림 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퇴장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 제>

현 행

[별표1]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제6조 제1항 관련)

1.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어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개 인	1,000	700	500
단 체	800	500	300

가. 어른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나. 군인(일반병,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은 중·고등학생 요금을적용한다.

다. 단체 요금은 30명 이상을 말한다.

라. 만6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 한다

2.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및 주중	
야영장	야영데크 (2.7m×2.7m)	1동/1일	6,000		10개소
세미나실	67.8㎡	1실/4시간	50,000	30,000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휴양관	50.3㎡형(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8실
숲속의 집	49.8㎡형(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2실
	66.8㎡형 (8인기준)	1동/1일	150,000	70,000	2실
제2휴양관	28.5㎡형 (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제2휴양관	29.5㎡형 (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제2휴양관	36.2㎡형 (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1실
제2휴양관	43.1㎡형 (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2실

가.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 8월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나. “비수기 주중” 이란 “성주기 및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개 정 안

[별표1]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제6조 제1항 관련)

1.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어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개 인	1,000	700	500
단 체	800	500	300

가. 어른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나. 군인(일반병,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은 중·고등학생 요금을적용한다.

다. 단체 요금은 30명 이상을 말한다.

라. 만6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 한다

2.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및 주중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세미나실	67.8㎡	1실/4시간	50,000	30,000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휴양관	50.3㎡형 (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8실
숲속의 집	49.8㎡형 (6인기준)	1동/1일	110,000	60,000	2실
	66.8㎡형 (8인기준)	1동/1일	150,000	70,000	2실
제2휴양관	28.5㎡형 (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제2휴양관	29.5㎡형 (2인기준)	1동/1일	80,000	50,000	2실
제2휴양관	36.2㎡형 (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1실
제2휴양관	43.1㎡형 (4인기준)	1동/1일	100,000	60,000	2실

가.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 8월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나. “비수기 주중” 이란 “성주기 및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2]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 (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요금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당일 취소	·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구 분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요금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당일 취소	·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